

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

1. 보조사업명 : 2026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

2. 보조사업자

○ 주 소 :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 2087-30

○ 성 명 : 안숙희

3. 교부결정액 및 결정내역

가. 교부결정액 : 금17,100,000원(금일천칠백일십만원)

나. 교부결정 내역

(단위:원)

구분 (사업명)	계	교부결정액				용자	자부담	비고
		소계	기금	도비	군비			
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	34,200,000	17,100,000	10,260,000	2,052,000	4,788,000	10,260,000	6,840,000	

4. 교부조건

[일반사항]

보조사업자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과 「지방보조금법」, 「지방보조금법 시행령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,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,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1.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「2026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」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2.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.
3.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
4.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.
5.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.

[보조사업 집행]

1.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- 가.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(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
 - 나. 보조사업을 다른 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
 - 다.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
2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,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3.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2026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,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.
4.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군수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5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[보조사업 정산]

1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(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.
※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

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.

2.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을 교부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3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·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.

※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,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

4.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
가.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

나.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

5.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, 증거서류,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,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.

6.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.

7.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

가.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.

나.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,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다.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지, 건물, 동산 등의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 등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.

※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사후관리기간

재산명	사후관리 기간		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
	부터	까지	
-기계 장비	구입일	5년간	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-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·ICT설비		10년간	

[교부결정의 취소 등]

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,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, 보조금 반환,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, 「지방보조금법」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,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바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- 사. 사업계획에 예정된 “토지 또는 시설물”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아. 법령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보조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제재 및 벌칙]

○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
- 나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
- 다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
- 라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

위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니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」, 「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」과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2026 3. .

옥 천 군 수



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

1. 보조사업명 : 2026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

2. 보조사업자

○ 주 소 :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 2087-29

○ 성 명 : 민경열

3. 교부결정액 및 결정내역

가. 교부결정액 : 금12,200,000원(금일천이백이십만원)

나. 교부결정 내역

(단위:원)

구분 (사업명)	계	교부결정액				용자	자부담	비고
		소계	기금	도비	군비			
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	24,400,000	12,200,000	7,320,000	1,464,000	3,416,000	7,320,000	4,880,000	

4. 교부조건

[일반사항]

보조사업자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과 「지방보조금법」, 「지방보조금법 시행령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,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,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3.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「2026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」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3.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
4.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.
5.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조건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.

[보조사업 집행]

1.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- 가.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(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
 - 나. 보조사업을 다른 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
 - 다.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
2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,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3.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2026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,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.
4.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군수는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
5.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[보조사업 정산]

1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(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.
※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

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.

2.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을 교부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다만,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·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3.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·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.

※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,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

4.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
가.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

나.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

5.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, 증거서류,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,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.

6.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.

7.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

가.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.

나.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,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.

다.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토지, 건물, 동산 등의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 등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습니다.

※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및 사후관리기간

재산명	사후관리 기간		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
	부터	까지	
-기계 장비	구입일	5년간	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별지 제19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-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·ICT설비		10년간	

[교부결정의 취소 등]

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,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, 보조금 반환,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, 「지방보조금법」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,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나.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다.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
- 라.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
- 마.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
- 바.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사업자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- 사. 사업계획에 예정된 “토지 또는 시설물”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아. 법령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보조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[제재 및 벌칙]

○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- 가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
- 나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
- 다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
- 라. 「지방보조금법」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

위와 같이 조건을 부여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니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」, 「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」과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.

2026 3. .

옥 천 군 수

